

# 감사보고서

본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의 2022. 3. 1부터 2023. 2. 28로 종결되는 2022학년도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,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확인 및 검토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2023. 2. 28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법인과 학교의 결산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2023년 4월 6일

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

감사

권태훈

감사

정상경

피감사자(입회인)

법인 경영지원그룹장

최재성

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귀하